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일반[]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계좌번호		⑤ 가입일자	

()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 (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3항 및 제91조의20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청년형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청년형의 경우로서 전환가입을 위해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